

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

제 정 2017. 12. 28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 및 추천) ①추천위원회는 연구원의 원장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하는 경우에 설치하고, 원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추천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된다.

②추천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

제2장 추천위원회 구성

제3조(구성)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
1. 전라북도지사 추천인사 3인
2. 전라북도의회 의장 추천 외부전문가 3인
3. 전북연구원 이사회 추천인사 3인

②위원이 원장후보로 응모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고, 추천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추천을 받는다.

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의무) ①위원은 원장후보자의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위원은 원장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당 등)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추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행정지원부장으로 한다.

②추천위원회의 운영주관부서는 기획행정지원부로 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추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 작성 및 보고) ①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 때에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③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장 원장후보자 공개모집 및 심사기준

제10조(공개모집) ①원장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 공고는 임기만료 60일 전에,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공개모집 사항은 연구원 및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, 필요시 일간지 및 전문인력 채용사이트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.

③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2배수에 미달하거나,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.

④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.

⑤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제11조(자격기준) 원장의 자격기준은 전북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 경력이 있

는 자

- 2.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
- 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민간연구기관의 기관장 경력이 있는 자
- 4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
- 5. 기타 연구원 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추고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전북연구원을 육성·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

제12조(결격사유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.

제13조(응모신청절차)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.

- 1. 지원서
- 2. 이력서
- 3. 자기소개서
- 4. 직무수행계획서
- 5.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관련자격증
- 6.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 포함)
- 7.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료

제14조(심사방법) ①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
②서류 및 면접심사시 응모자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(소수점은 첫째자리까지

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)로 결정한다.

③제2항의 각 심사별 합계점수 산출시 심사위원별 최상위점수와 최하위점수는 제외한다.

④동점자 처리는 추천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로서 결정한다.

제15조(서류심사) 서류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별지서식 제1호 <원장후보자 서류심사 평가표>를 활용한다.

제16조(면접심사) 면접심사는 서류심사결과 60점 이상인 응모자를 대상으로 별지서식 제2호 <원장후보자 면접심사 평가표>를 활용하여 하위, 60점 이상인 자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위 5인을 대상으로 한다.

제17조(후보자 선정 및 추천) ① 추천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한 각 위원들의 서류심사(30%)와 면접심사(70%) 합계점수 상위 2위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서식 제3호<원장후보자 추천의결서>에 의거 이사회에 가나다순의 무순위로 추천한다.

②추천위원회가 응모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8조(심사 결과물 관리) 추천위원회는 심사에 활용한 일체의 심사 결과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심사채점표는 추천위원회의 임무가 끝난 후 위원장의 입회하에 밀봉하여 기획행정지원부에서 보관한다.

제1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해진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서류심사 평가표

공모직위	응시번호	성명
원 장		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평가기준항목	점수					심사위원 점수
			매우 우수	우 수	보 통	미 흡	아주 미흡	
전문 지식과 학문적 식견 (30점)	전공 및 경력 (10점)	○ 전공분야 및 학위(지역발전분야) ○ 근무경력 등 모집분야와 일치	10	8	6	4	2	
	연구실적 (10점)	○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지 게재논문 및 저서 ○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용역수행실적	10	8	6	4	2	
	위원회 활동 (10점)	○ 정부기관 위원회 활동 경력 ○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 주요업적	10	8	6	4	2	
기관 경영 능력 (45점)	발전성 (25점)	○ 연구원 발전의지 (연구환경 개선, 연구인력 확충, 발전계획 등) ○ 연구원 경영계획과 실천능력	25	20	15	10	5	
	경영능력 (20점)	○ 연구소, 학교, 행정기관 등 조직운영 경력	20	16	12	8	4	
도덕성 및 신망도 (25점)	신망도 (15점)	○ 사회적 덕망 및 청렴성 ○ 민주적 · 합리적 사고와 소통 능력	15	12	9	6	3	
	봉사심 (10점)	○ 지역사회 참여활동 및 기여도	10	8	6	4	2	
합 계(100점)								

년 월 일

심사위원 성명 : (인)

(별지서식 제2호)

면접심사 평가표

공모직위	응시번호	성명
원 장		

구분	평가항목	점수					심사위원점수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아주 미흡	
경영 능력 (30)	1.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능력	10	8	6	4	2	
	2.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	10	8	6	4	2	
	3. 연구원 장기발전 비전제시 및 추진력	10	8	6	4	2	
전문성 (30)	1. 연구원에 적합한 경륜과 전문지식	10	8	6	4	2	
	2.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	10	8	6	4	2	
	3. 대형국가사업 발굴능력	10	8	6	4	2	
리더십 (20)	1. 연구조직을 이끌 수 있는 통솔력	10	8	6	4	2	
	2. 원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솔선하는 능력	10	8	6	4	2	
대외 능력 (20)	1. 산·관·학 등 유기적 관계로 지역역량 결집능력	10	8	6	4	2	
	2. 중앙정부, 지자체 등 대외소통 능력	10	8	6	4	2	
합 계 (100점)							

년 월 일

심사위원 성명 : (인)

(별지서식 제3호)

원장후보자 추천의결서

- 1. 일 시 : . . .
- 2. 장 소 :
- 3. 의결내용

전북연구원장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·의결합니다.

성명	생년월일	주요경력	비고
	. . .		
	. . .		

※ 후보자는 가나다순임

20 . . .

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

위원장 (인)

위 원 (인) 위 원 (인)

위 원 (인) 위 원 (인)

위 원 (인) 위 원 (인)

위 원 (인) 위 원 (인)

전북연구원 이사회 귀중